

○ 이삼순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호 보사환경여성위원회 2004. 11. 24)

(질 의)

□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확충계획 및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는지와
- 아울러 상대적으로 힘든 24시간 보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 현재 도내에는 야간보육시설 60개소와 24시간 보육시설 7개소 등 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 시·군별 야간·24시간 보육시설 현황 : “별첨”
이들 보육시설은 수요발생시마다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교사인건비 지원 등으로 수요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를 지원하고, 24시간 보육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는 교사 1인 인건비로 도비 1,21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의 경우 수요확대에 따른 예산부족시 여성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수요에 충족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야간보육 등 특수보육 기능을 갖춘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시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등 수요가 많은 도시형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국공립·법인 시설 중 시간연장형으로 지정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확충할 계획입니다.
※ 근무시간 22시 30분 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보육아동 5명당 교사 1인의 인건비 100% 지원
-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4시간 보육시설은 7개소이나,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별첨 】

○ 시·군별 야간·24시간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군별	계	야간보육	24시간	비고
총 계	70	61	9	
본 청	67	60	7	
수 원 시	15	15		
성 남 시	11	11		
부 천 시	6	3	3	
안 양 시	28	27	1	
안 산 시	3	1	2	
용 인 시	1	1		
평 택 시				
광 명 시				
시 흥 시				
군 포 시	2	1	1	
화 성 시				
이 천 시				
김 포 시				
광 주 시				
안 성 시				
하 남 시				
의 왕 시	1	1		
오 산 시				
여 주 군				
양 평 군				
과 천 시				
2 청	3	1	2	

(질 의)

☐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 장애아들은 어릴적 비장애아들과 어울리고,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장애아 보육시설은 전담시설 6개소와 통합시설 64개소가 있으며, 그 중 도가 지원하는 시설은 전담시설 2개소입니다.
-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비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전문교사에 대해서는 도비로 특수근무수당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비사업의 장애아전담시설은 금년도에 용인시에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2005년에도 안양시에 1개소를 신축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지원단가 / 면적기준 : 개소당 287백만원 / 120명(여성부 지침)

(질 의)

☐ 여성정책 자체예산 확대 방안

- 여성정책 관련 예산분야의 경우 도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자체사업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자체사업의 예산비중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의 예산은 도 재정자립도에 비해 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이 낮은 수준입니다.
- 여성정책국의 예산은 각각 전년도 대비하여 2003년도에는 24%, 금년도에는 39%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도 2003년도 20%에서 금년도에는 21.7%로 증가하였습니다만
- 여성정책국의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서 여성회관 건립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등 대규모 사업의 포함여부에 따라 해당연도의 예산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며 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도 큰 폭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 또한 여성정책국의 예산은 여성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등의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타 실·국에 비해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이 낮은 것이며 이를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정책국의 사업예산 중 국비지원과는 별개로 도 자체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여성복지, 보육 및 청소년복지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 e-사이버 여성센터 운영

- e-사이버 여성센터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의 진행경과와 콘텐츠는 무엇이며,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e-사이버 여성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도내 지역간 편차의 해소와 균형적인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 여성 IT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 용역은 입찰을 통해 삼성SDS(주) 멀티 캠퍼스와 '04. 10. 12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용역기간 : 2004. 10. 12 ~ 2005. 4. 11) 용역계약액은 1억 3,489만원 중 선금금 6,744만원을 지급하여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별·권역별 환경분석 및 여성교육 수요분석
 - 여성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현장 적용계획 수립
 - 여성 IT직업훈련 과정·분야별 교육 로드맵 개발
 -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선정·운영방안 등이며이번 연구용역에는 e-learning 전문가와 여성분야 전문가 4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을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구체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교육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 용역의 방향수립과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용역은 기업체의 여성인력 요구수준과 도내 여성들이 갖고 있는 IT기술 수준간의 격차를 파악, 여성들의 기술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IT기술 트렌드에 맞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용역을 통해 향후 추진될 e-사이버 여성센터의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교육 시범운영,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선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여성회관 건립 관련

- 성남시 중원구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라 하시면서
- 자치단체에서 중원구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도비 지원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성남시에 소재한 여성 교육기관으로는 수정구의 여성복지센터('87. 5. 27개관)와 분당구의 중앙문화 정보센터('01. 11. 13개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98. 5. 2)가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에서 여성의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3년도 운영실적

	교 육 실 적									여성 상담실	취업알선		
	계 (등록 기준)	직업교육				사회·문화교육		기타교육			구직	구인	취업
		등록	수료	자격증 취득	취·창업	등록	수료	등록	수료				
여성복지 센터	4,349	2,714	2,191	76	52	485	406	1,150	909	839명	301	98	98
문화정보 센터	2,009					2,009	1,494						
인력개발 센터	4,172	1,556	1,201	158	218	2,616				572	628	1,128	370

※ 기타사항으로 문화정보센터는 체육관(59회 142일) 및 수영장(21,692명) 이용실적이 있음.

-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여성회관 건립시 부지를 확보한 기관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적용, 건축비의 30%를 보조하고 있으나
-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시·군 보조사업 차등보조계획에 의거 보통교부세 불 교부 단체에 해당되므로 여성회관 건립시 건축비의 20%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시·군 고유사무로서 성남시장이 그 건립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여성회관 건립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